

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.

본인확인 및 인감대조	담당	책임자	관리자	부점장

추 가 약 정 서

(재정기금대출용)

주식회사 하나은행 앞

20 년 월 일

채 무 자 (인)

주 소

연대보증인 (인)

주 소

담보제공자 (인)

주 소

본인은 은행과 약정한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(기업용)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제1조(재정기금대출)

본인이 신청한 대출은 협약기관인 ()와(과)의 재정기금대출 협약에서 정한 내용 및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입니다.

지원자금명	여신(한도)금액	금	원
-------	----------	---	---

※ 협약기관 : 재정기금대출의 자금대여 기관으로 대출금리 및 대출금의 상환에 관한 최종 결정 기관

제2조(대출금리의 결정)

재정기금대출의 금리는 협약기관에서 통지하는 대고객 고시금리가 적용됩니다.

제3조(대출기간 중의 기간 및 금리 변경)

협약기관에 의해 대출기간,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출금 만기일 전이라도, 변경된 대출기간 및 대출금리 등의 조건에 따를 것을 약약합니다.

제4조(대출의 기일전 변제의무)

본 대출은 협약기관에 의해 대출금의 회수 조치를 요청 받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기한 전 채무변제 의무를 지고 당해 대출금을 당초 상환 기일에 불구하고 곧 상환하기로 합니다.

제5조(기타)

- 재정기금대출 중단사유가 여신거래기본약관 (기업용)상의 기한이익상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(기업용)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- 본 대출은 협약에 따라 사업자 관련 정보 및 대출 관련 정보를 협약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, 협약기관이 사용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본인은 이 추가약정서상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.

본 인

(인)